

의안번호	제 32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#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  
발 의 자 : 연철흙, 전원표, 허창원,  
송미애, 이옥규, 정상교,  
이상식

## 1. 개정이유

- 인권보호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며,
-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인권보호관의 설치·운영 (안 제18조)
- 인권센터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(안 제19조)
-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 - 기여 → 이바지, 손상하여 → 떨어뜨려, 권고 → 요구, 없는 한 → 없으면, 수립하여야 → 세워야, 개최하거나 → 열거나, 자 → 사람 등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헌법 제10조, 제11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8. 8. 1 ~ 8. 20

##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수립하는”을 “세우는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발굴하고”를 “찾아내고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세워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립하고”를 “세우고”로 한다.

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, 제10조, 제17조, 제8조, 제20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.

제17조(중전의 제10조) 제목 “(인권센터)”를 “(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3항제3호”로, “없는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구현”을 “실현”으로 한다.

제20조(중전의 제12조) 중 “기여”를 “이바지”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4조)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

중 “위원의 30%는 여성으로 한다”를 “위원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“손상하여”를 “떨어뜨려”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5조)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16조) 제1항 중 “권고한다”를 “요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”을 “따라 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 요구사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인권보호관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.

②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,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근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하며, 그 외의 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.

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권보호관 회의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.

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.

2.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 업무

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전단 중 “위원회 또는 소위원회”를 “인권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인권센터”로, “개최하거”를 “열거”로 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.

제21조(중전의 제20조)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인권행정 기반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한 기관·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정책 공유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중전의 제20조)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우</u> <u>는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인권존중 및 차별금지)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,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<u>아니한다</u>.</p>	<p>제4조(인권존중 및 차별금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않는다</u>.</p>
<p>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<u>발굴하고</u>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찾아내고</u> ----- --.</p>
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</p>	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① ---- ----- -----</p>

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  
권증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  
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 
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 
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 
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  
다.

⑤ (생략)

제8조·제9조 (생략)

제10조(인권센터) ① ~ ⑥  
(생략)

⑦ 제2항제3호에 적시된 기관  
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
도지사가 지시 또는 권고한  
개선사항을 존중하여 조치하  
여야 하고, 권고통지 받은  
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 
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 
야 한다.

⑧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·  
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
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세워야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세  
우고 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·제10조 (현행 제8조 및  
제9조와 같음)

제17조(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)  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3항제3호-----  
----- 없으면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-----  
----- 필요-----  
-----.



제11조(충북도민 인권헌장)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.

제12조(포상 등) 도지사는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·외국인에 대하여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 (생략)
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  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의 30%는 여성으로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④ (생략)

제8조(충북도민 인권헌장) ---  
-----  
----- 실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(포상 등) -----  
-----  
--- 이바지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
③ ----- 사람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원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5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 
(생략)

③ 인권센터가 접수 또는 조사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담당하는 인권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.

④ (생략)

제16조(정책 등의 개선 권고)

① 위원회는 도의 자치법규,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 
-----떨어뜨려-----  
-----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14조(정책 등의 개선 권고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요구할 수 있다.

② ----- 따라  
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

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받은 경우에는 그 개선 요구 사항 -----  
-----.

제18조(인권보호관 설치·운영)

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.

②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,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근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하며, 그 외의 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.

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권보호관 회의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.

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

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근  
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.

2.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 
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으로부  
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  
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 
연임할 수 있다.

⑥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효  
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 
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 
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·제18조 (생략)

제15조·제16조 (현행 제17조  
및 제18조와 같음)

제19조(관련기관 의견제출 요  
청)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  
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 
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단체의  
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  
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 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 
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 
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9조(관련기관 의견제출 요  
청) ① 인권센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  
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

② 인권센터-----  
----- 열거

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20조(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도지사는 인권행정 기반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한 기관·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정책 공유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-----  
-----  
-----.

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헌법

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

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